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490호
2. 발 의 자 : 채수지 의원 등 10명
3. 발의일자 : 2025. 2. 26.
4. 회부일자 : 2025. 4. 2.

II. 제안이유

-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이미 허가된 시설 사용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학교 시설 사용 허가가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허가된 시설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1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사용 허가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1.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자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제4항 신설).
2. 학교 사정 상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취소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5항 신설).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3.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입법예고(2025. 4. 5. ~ 4. 9.) 결과 : 총 90건
(홈페이지, 우편, 이메일 접수 포함)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2월 26일 채수지 의원 등 10명에 의해 의안번호 제2490호로 제출되어 2025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장이 시설 사용 허가 신청이나 기승인된 사용 허가의 취소 등을 결정하면서 사용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사용 허가 취소 시 사용자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하고, 학교 사정에 따라 사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허가 종료 1개월 전에는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은¹⁾ 지역주민에게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1조는²⁾ 모든 국민이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학교 시설 개방은 오랜 기간 지역의 공간 수요와 주민 권리 보호, 생활체육 진흥 필요성, 학생 안전 및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 등이 상호 대립하면서 지역사회 안팎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1)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의 권리)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 특히, 서울시의 학교 시설 개방 문제는 현행 조례의 제·개정 과정 등에서 다양한 논란을 촉발해 왔고, 주로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안전 문제 및 교직원 업무 증가, 특정 단체나 동호회의 독점적 사용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³⁾

○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역시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 학교시설 개방이 교육활동 보호라는 가치와 공존하도록 시설 개방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시설관리 보조 인력(스쿨매니저) 시범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1] 서울시교육청 시설 개방 관련 사업 개요⁴⁾

□ 추진 실적 ○ 학교시설 개방 사업 성과 분석을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 '25.1~2월 - 시설 이용자, 학교 관리자, 자치구(25개) 담당자 대상 ○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스쿨매니저 시범운영: 12개 자치구, 34교																													
□ 향후 계획 ○ 2025년 스쿨매니저 시범학교 추진 계획 수립 및 시범학교 공모: '25.3~4월 ○ 학교시설 개방 우수학교 인센티브 기준 알림 및 지원: '25.7~9월 ○ 학교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행정재산 사용허가 매뉴얼 개정: 연중 ○ 사용허가 관련 소송 및 민원 관련 현장 맞춤형 컨설팅: 연중																													
□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25.3.15.기준) <table> <tr> <th rowspan="2">예산사업명</th><th rowspan="2">추진사업명</th><th rowspan="2">'25 예산 (예산현액)</th><th rowspan="2">'24 최종예산</th><th colspan="2">집행액 및 집행률</th></tr> <tr> <th>원인행위액 (집행률)</th><th>지출액 (집행률)</th></tr> <tr> <td rowspan="3">397. 재산관리 일반운영비</td><td>공유재산심의회운영</td><td>15,080</td><td>16,240</td><td>836 (5.5)</td><td>836 (5.5)</td></tr> <tr> <td>유휴시설물관리</td><td>1,078,454</td><td>1,257,978</td><td>735,598 (68.2)</td><td>191,270 (17.7)</td></tr> <tr> <td>재산관리일반</td><td>262,606</td><td>4,743,289</td><td>10,484 (4.0)</td><td>10,255 (3.9)</td></tr> </table>						예산사업명	추진사업명	'25 예산 (예산현액)	'24 최종예산	집행액 및 집행률		원인행위액 (집행률)	지출액 (집행률)	397.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공유재산심의회운영	15,080	16,240	836 (5.5)	836 (5.5)	유휴시설물관리	1,078,454	1,257,978	735,598 (68.2)	191,270 (17.7)	재산관리일반	262,606	4,743,289	10,484 (4.0)	10,255 (3.9)
예산사업명	추진사업명	'25 예산 (예산현액)	'24 최종예산	집행액 및 집행률																									
				원인행위액 (집행률)	지출액 (집행률)																								
397.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공유재산심의회운영	15,080	16,240	836 (5.5)	836 (5.5)																								
	유휴시설물관리	1,078,454	1,257,978	735,598 (68.2)	191,270 (17.7)																								
	재산관리일반	262,606	4,743,289	10,484 (4.0)	10,255 (3.9)																								

3) 조운주 기자(2015.7.16.), [이슈 분석] 학교는 공공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학교 개방 논란,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1507161802187417> (검색일 2025-04-24)
 김용래 기자(2016.9.9.), 서울 학교시설 전면개방 조례 통과…교육청·교원단체 강력반발,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60909179900004> (검색일 2025-04-24)
 박채영 기자(2019.12.20.), 일선 학교장 권한 축소 서울시의회 조례 논란,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1912202108045> (검색일 2025-04-24) 등을 참조.
 4) 서울시교육청(2025.4.),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자료, 278-279쪽.

예산사업명	추진사업명	'25 예산 (예산현액)	'24 최종예산	집행액 및 집행률	
				원인행위액 (집행률)	지출액 (집행률)
	학교시설예약시스템유지관리	25,520	25,600	21,120 (82.8)	3,520 (13.8)
398. 학교시설개방 우수학교 운영비지원	공·사립학교 운영비 지원	3,023,720	3,484,247	47,230 (1.6)	47,230 (1.6)
비예산	수영장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용 허가 관련 맞춤 컨설팅	-	-	-	-
합계		4,405,380	9,527,354	815,268 (18.5)	253,111 (5.7)

[표-2] 서울시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전환사업)' 사업 개요5)

□ 사업목적 ○ 주민개방을 조건으로 학교체육시설 개보수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의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 □ 사업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보조) □ 사업부서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사업내용 ○ 사업장소: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및 체육시설 ○ 사업기간: 2025년 1월 ~ 2025년 12월 ○ 사업내용: 운동장 및 강당, 체육관 개보수 지원하여 체육시설 주민개방(공모선정) ○ 총사업비: 2,500,000천원(전액 시비) □ 추진경위 ○ 2013년까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2014년부터 지역특별회계 사업으로 변경 지원 ○ 2019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19. 2월) ○ 2023 생활체육시설 확충계획('19. 6월) ○ 연차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추진계획 ('20.1월~) □ 최근 3년 추진실적 ○ 2022년도 : 53개소 조성 및 개보수 지원(2,500,000천원) ○ 2023년도 : 56개소 조성 및 개보수 지원(2,330,874천원) ○ 2024년도 : 46개소 조성 및 개보수 지원(2,141,000천원) *하반기 추가 지원('24. 11월, 5개소) □ 향후 기대효과 ○ 학생과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 및 체육관 개방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

5) 2025년 서울시 예산서 사업별 설명자료 중 발췌
<https://yesan.seoul.go.kr/wk/wkList.do> (검색일 2025-04-24)

- 그럼에도 학교시설 개방 문제는 여전히 여러 차원에서 주요한 의제로 논의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등을 통해 학교장의 일방적인 학교시설 사용 허가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권익을 침해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⁶⁾
- 이에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원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취소에 관한 절차를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개정 취지에 따른 별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사용 허가 취소 시 즉시 통보 규정 신설에 관한 의견(안 제10조제4항 신설)

- 안 제10조제4항은 학교장이 사용 허가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요청한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문이 언급하는 “취소 등”은 학교장에 의하여 안 제10조 제1항각호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용 허가 시 기간과 사용료, 사용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즉, 학교 시설의 사용 허가는 그 법률적 근거가 되는 「공유재산법」 제20조의⁷⁾ 내용에 비추어볼 때 행정청이 하는 재량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2025.2.19., 최재란 의원),

7)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따라서 학교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는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처분(이하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 여기에서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⁸⁾ 의미하고, 대법원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대하여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강박상 특허에⁹⁾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¹⁰⁾

○ 한편, 개인이나 단체가 시행하는 사용 허가의 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제2조제1호가목 1)에¹¹⁾ 따른 법정민원으로, 민원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한과 통지, 거부처분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 이와 같이 상기한 법령을 종합했을 때 개인이나 단체의 사용 허가는 행정청에 신청과 승인을 요하는 절차로서 민원 처리 사무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결정에 있어서는 재량행위의 일종이며, 사용자의 관점에서는 특정한 권리를 부여받는 행위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사실을 전제했을 때 사용 허가를 신청하는 신청인(민원인)은 「민원처리법」 제5조제1항에¹²⁾ 따라 행정기관에 신속하고 공정하며 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며, 행정기관의 담당자

8) 「행정기본법」 제2조제4호,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

9) 특정인에 대해 권리를 부여하거나 권리를 향유하면서 동시에 의무를 부담 하게 되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어업면허, 광업권의 설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료 : 법제처(2024), 「법령 입안 심사 기준 2024」, 138-139쪽.)

10)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1) 「민원처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12) 「민원처리법」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역시 같은법 제4조제1항에¹³⁾ 따라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또한, 사용 허가의 취소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변동하는 것으로서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는 사용 허가를 승인받은 사용자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측면에서 사용자에게 아주 중요한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장이 사용자에게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강학상 특허를 부여받은 사용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적절한 입법적 조치이며, 「민원처리법」이 규정한 민원인의 권리 보호 조항 등에도 합치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2) 3개월 이상의 사용 허가 취소 시 사전 통보 의무규정 신설에 관한 의견 (안 제10조제5항 신설)

- 한편, 안 제10조제5항은 학교장이 교육활동이나 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하다는 이유로 허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용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최소 사용 허가가 종료되기 1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조문은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기초로 하여 그 의미와 입법 의도를 추론해 볼 때, 학교장이 장기간 사용이 예정되거나 진행 중인 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시설 개방 업무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조치로 이해됩니다.
- 조례안이 제안이유 중 하나로 “학교장이 허가된 시설 사용을 취소 하고자 할 경우 1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13) 「민원처리법」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임의로 사용 허가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다만 동 조문은 안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용 허가 취소 시 즉시 통보 규정과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제4항에서 학교장에게 취소 등의 결정이 이뤄진 즉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지만, 같은조 제5항에서 허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용 허가가 학교 사정으로 취소될 시 최소 1개월 전에 취소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는바, 두 조문이 허가 기간을 기준으로 통보 기한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조문은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그 즉시 사용자의 사용허가 기간을 종료할 수 없으며, 취소 통지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의 사용허가 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등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안 제10조제5항이 사전 통보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교육 활동이나 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이유”가 학교장이 예측할 수 없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일례로 “자연재해 등으로 학교시설이 부분 또는 전부 파손되어 긴급히 시설보수가 요구되는 경우”나 “전염병과 같은 사유로 학사 일정이 변경되어 학교행사 등의 개최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 등은 학교장이 예측하기 어렵지만, “학교 사정상 부득이하게 사용 허가를 취소해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동 조문은 학교장이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할 때에는 해당 조문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예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함께 안 제10조제5항이 “사용 허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시설 사용 허가를 동 조문의 적용에서 예외로 하는 것은 현행 조례 내용과도 다소 합치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조문 수정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동 조문은 학교장이 장기간 사용 허가를 도중에 취소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취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로 이해되나, 현행 조례는 “장기간 사용허가”를 “사용 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¹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한 사항을 고려할 때 동 조문은 조례 내용 전반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문의 적용을 제외하는 대상을 “사용 허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10조제5항에 대하여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긴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가 있으며, 안 같은조 제4항의 즉시 통보 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4469, 2025.4.9.).¹⁵⁾

14)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사용료) ③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허가 시 사용료는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이자를 붙일 수 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학교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2. 100분의 60 감면

가.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평생교육활동이나 생활체육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15)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견 제출(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4469, 2025.4.9.)

다. 집행기관 의견 및 의견 제출에 관한 검토

- 서울시교육청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학교 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하고 있어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권리 보호 측면과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보호 측면을 모두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4469, 2025.4.9.).¹⁶⁾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4월 14일 서울시 내 1,090개 기관을 대상으로¹⁷⁾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진행하였으며, 총 226개 기관에서 해당 조례안에 관한 수정 또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의견 조회에서는 안 제10조제4항에 관하여 즉시 실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 존재하고, 사용자의 귀책 사유임에도 그 책임이 학교로 전가될 우려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1건)과 실제적으로 사용허가 취소에 대한 통보가 이뤄지고 있어 조문 신설이 불필요하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1건)이 있었습니다.
 - 이어 안 제10조제5항에 관해서는 부득이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 있어 조문 적용의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33건)과 교육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더라도 1개월간 시설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어 통지 기간을 7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1건), 학교의 전문성과 자율성·학교장의 재량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교직원 업무 과중·교육활동 침해 등을 고려하여 조문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16)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견 제출(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4469, 2025.4.9.)

17) 본청각과(26), 지원청(11), 직속(29), 단유(47), 공립특(11), 공립초(566), 공립중(276), 공립고(124)

[표-3] 본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 등의 의견 조회 결과

(단위 : 건)

조례안명	구분	수정의견	삭제의견
	조문		
채수지 의원안 (의안번호 제2490호)	1. 사용 허가 취소 시 즉시 통보(안 제10조제4항 신설)	1	1
	2. 3개월 이상의 사용 허가 취소 시 사전 통보 의무 규정(안 제10조제5항 신설)	34	그 외 전체삭제

○ 한편, 2025년 4월 5일부터 5일간 진행한 입법예고에서 본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90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 입법예고를 통해 제출된 의견은 크게 ① 무분별한 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 안전 우려, ② 학교장 등의 권한 침해, ③ 시설관리상의 어려움, ④ 사고 및 민원 발생 시 책임소재 모호 등으로 유형화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표-4] 입법예고 의견의 요점별 구분

(단위 : 건)

구분	주요 요점					
	① 안전 우려	② 권한 침해	③ 업무 증가	④ 시설 관리	⑤ 책임 소재	⑥ 단순 반대 및 기타
의견 수	73	6	1	5	2	16

주) 하나의 의견에 두 가지 이상의 요점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요점별로 각각 숫자를 세었으므로, 개별 요점별 의견의 수는 입법예고 제출 의견의 총합보다 많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상당 부분 동 조례안이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효과가 아니라 시설 개방에 따른 우려 사항에 가깝고, 학교 사정에 의한 사용 허가 취소 시 사용자의 권익 보호 방안이나 시설 미개방 사유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 방법, 사용 허가 시 사용자 책임 강화 등을 규정한 조례안의 내용과는 다소 무관하다고 보입니다.
- 다만, 학교 현장에서 시설 개방 전반에 대해 상당한 우려와 피로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입법예고와 의견 조회 등을 통해 확인되었는바,

동 조례안이 시설 개방 시 사용자 권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 현장에서 우려하는 교직원의 업무상 고충 역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동 조례안의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김지수(2180-826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 제17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4. 12. 17.] [대통령령 제35079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1.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